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11. 7.

예 천 군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예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 된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정비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 변경(안 별표1)

월정수당 지급기준(제2조제2항 관련)

연 도	지 급 액
2023	매월 1,749,000원
2024 ~ 2026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한 금액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 반영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평가 :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준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예천군의회 (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054- 650- 6596, FAX 054- 650- 6409)

· 전자우편(이메일) : hookor93@korea.kr

의견제출서				
자치법규명		예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의 개정규
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월정수당 지급기준(제2조제2항 관련)

연 도	지 급 액
2023	매월 1,749,000원
2024 ~ 2026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

급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